

안세회계법인 · 829-7575 세계재경저널 *AnSwer*

eAnSe.com • • • 2022/5/16

전직원 회람 공지 MEMO+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·計·經營 戰略

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방법

개념, 구분	일반과세자		간이과세자
정의 범위	모든 법인사업자 + 간이과세자 아닌 개인사업 자		직전 1년간 공급가(매출액)가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(2021년부터 변경)
과세기간	17](1.1~6.30)	27](7.1~12.31)	1년에 한번 통합신고(l. 1 ~ 12. 31)
신고시점	7월 25일	1월 25일	매년 1회 1월 25일
세금계산서	모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		• 1년매출 4800만원 미만자는 발행불가 • 직전매출 4800만원 이상 - 8천만원까지는 발행가능
납부세금	매출액×10% - 실제 매입액×10%		매출액×업종별 부가이익율×10% (부가율 : 전기가스수도 5%, 소매·음식점 15%, 제조·농·임업 20%, 숙박 25%, 건설운 수창고 기타서비스 30%, 금융·보험·전문과 학기술서비스 등 40%)
예정부과	· 개인사업자 3개월 단위 예정고지 · 법인 중에서도 전 6개월 매출 1.5억 미만시 3개 월 단위 예정고지		전년도 세액의 50%를 상반기 6개월에 종료 후 7월 25일에 6개월 단위 고지납부